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1992. 3. 7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10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임시회

○ 제 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3. 5)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관리국장 김근학)

가 제안 이유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통, 폐합으로 인한 본교폐지, 분교장격하, 분교장폐지, 행정구역 변경, 학과개편등으로 충청북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변경이 불가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 자

○ 학교신설 (청주의국어고등학교외 6교)

○ 본교폐지 (충주 - 복성국민학교)

○ 분교장격하 학교 (수룡국민학교외 14교)

○ 분교장폐지 학교 (복일국민학교 청애원분교장외 19교)

○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학교 (증평여자고등학교외 1교)

○ 위치이전 학교 (목도중학교)

○ 행정구역 변경지역 학교 (추풍령국민학교외 4교)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봉정국민학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인구의 이동과 지역명칭의 변경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 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91.7.5 제1332호)로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고

나.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91.12.31 제1301호)에 따른 주소 변경.

다.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로 주소가 변경되었음.

라.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계획안 및 분교폐지, 분교장폐지, 분교장 격하기준(대통령령)에 의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도모,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